

	<h2 style="margin: 0;">상벌 규칙</h2>		규정번호	3-4-4
			제정일자	1984.12.29
			개정일자	2012.04.30
			개정번호	Ver.6 총페이지 5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양미래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학칙 제9장에 의거 학생의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 ① 이 규칙의 운영은 학칙 제48조 제2항에 의거 설치된 학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에서 운영한다.

② 이 규칙에서 정한 학생의 포상과 징계에 관한 운영절차는 학생위원회의 회의 및 시행절차에 따른다.

제 2 장 포 상

제3조(대상) 본 대학 재학생으로서 학칙 제52조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1.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
2. 학교와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학생
3. 타 학생에게 모범이 될 만한 선행을 하였거나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여 학교의 명예를 높인 학생

제4조(종류) ① 포상은 학과별 학업우수상, 공로상으로 한다. 단,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외의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학업우수상

1. 이사장상 : 본 상은 학칙 제4조의 학부(과) 순서에 따라 윤번제로 당해 졸업 예정자 중 2개년간 또는 3개년간 학업 성적 평균 최고득점자에게 수여한다.
2. 과수석상 : 당해 졸업예정자 중 학부(과)별 학업성적 평균최고 득점자에게 수여한다.
3. 우수상 : 본 상은 당해 졸업예정자중 성적우수자에게 수여한다.

③ 공로상

1. 본 대학 재학중 학술연구나 기타 활동으로 학교의 명예와 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에게 수여한다.
2. 학생활동에 현저한 공적을 남긴 당해 졸업예정자에게 수여한다.

제5조(결격사유) 이 규칙 제3조에 해당하는 자라 하더라도 학칙을 위반하여 학칙 제53조에 의거 징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나 품행이 극히 불량한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수상결정) ① 학업 우수상은 당해 졸업 사정회에서 심의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② 공로상과 그 외의 포상은 학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제 3 장 징 계

제7조(징 계) 학칙 제53조에 의거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행위를 하였을 때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한다.

제8조(종류 및 기간)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으로 구분하며 그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신은 3일에서 7일로 한다.
2. 유기정학은 8일에서 14일로 한다.
3. 무기정학은 무기한으로 하되 징계일로부터 최소 14일이 경과된 뒤 개선의 정이 있을 때 해제할 수 있다.

제9조(근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근신에 처한다.

1. 교내에서 풍기를 문란케 한 자.
2. 수업태도가 불량하거나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자.
3. 교내 공공게시물을 무단으로 제거하거나 오손하는 자.
4. 수강태도가 불량하고 학생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를 자행하는 자
5. 기타 각 호에 준하는 행동을 한 자

제10조(유기정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유기정학에 처한다.

1. 근신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자로서 제 9조 각의1에 해당하는 자
2. 학내에서 음주 및 풍기문란 행위를 하거나 면학분위기를 저해한 자
3.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학내질서를 문란케 한 자
4. 타인에게 협박 또는 폭행을 한 자
5. 기타 각호에 준하는 행동을 한 자
6. 학교시설물을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침입하기 위하여 행동한 자

제11조(무기정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무기정학에 처한다.

1. 유기정학을 받은 적이 있는 자로서 제 10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교직원을 모욕하거나 정당한 지시에 반항한 자
3. 교내에서 불온문서를 무단 배포하거나 게시하는 자
4. 학교시설물을 파괴하거나 무단 반출하는 자
5. 고의로 수강 또는 고사 방해하는 행위를 선동하는 자
6. 집단 폭행에 가담하여 타 학생에게 상해를 입힌 자
7. 기타 각 호에 준하는 행동을 한 자

제12조 (퇴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퇴학에 처한다.

1. 무기정학을 받은적이 있는 자로서 제 11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타 학생을 폭행 또는 집단 폭행하여 중상해를 입힌 자
3. 고의로 학사업무를 방해하거나 서류를 탈취한 자
4. 징계중인 자로서 성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정이 보이지 않는 자
5. 학교의 명예를 심히 손상시킨 자
6. 학교의 문서나 직인을 위조하거나 도용하여 사용한 자.
7. 총장의 허가없이 집단적 행위를 선동하여 수업을 거부하거나 지장을 초래케한 자
8. 동맹휴학을 선동하거나 주동하는 자
9. 학내에서 정치활동을 하거나 할 목적으로 조직이나 선동적인 행동을 감행한 자
10. 교직원에게 폭언, 폭행 또는 교권을 침해한 행위를 하거나, 선동한 자
11. 기타 각 호에 준하는 행동을 한 자

제13조 <삭제>

제14조(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해당교 과목의 시험성적을 무효로 하고 근신이상의 징계를 한다.

1. 타인에게 답안을 보여주거나 보고 쓰는 자
2. 구두로 답안을 불러주거나 참고물을 보고 답안을 작성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당해 기간동안 실시되는 전 교과목의 시험 성적을 무효로 하고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한다.

1. 작성한 답안지를 서로 교환한 자
2. 대리시험을 행한 자나 응시케 한 자
3.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이를 거부한 자

제15조(징계의 발의) 징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학생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학생위원회에 발의한다.

1. 본인진술서 1부(본인 거부 시 생략할 수 있음)
2. 사건경위서 1부 또는 징계 사유서 1부
3. 지도교수 또는 학과(부)장 의견서 1부

제16조(징계결정) ① 퇴학 이외의 처벌과 해별에 대하여는 학생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단, 퇴학에 해당되는 처벌에 대해서는 학생위원회의 심의후 교수회의 인준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다만, 교수회의 결과 재심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는 학생지도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휴학자로서 징계가 결정된 자는 복학과 동시에 시행한다. 단, 퇴학에 해당할 경우에는 즉시 시행한다.

제17조(특별지도 및 권리의 정지) ① 퇴학 이외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징계기간 중 해당지도교수 및 학과(부)장의 계속적인 특별지도를 받아야하며 반성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근신처분을 받은 자는 수강을 할 수 있으나 수업이외의 모든 학생활동은 참여가 금지된다.

③ 근신이외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은 수강을 할 수 없으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해제되는 날까지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정지된다.

제18조(징계의 감면과 해제) ① 징계대상자나 징계중인 학생이 개선의 정이 뚜렷한 경우 학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징계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징계의 해제는 징계 받는 학생의 지도교수가 당해 학생의 서약서, 징계 해제 의견서 및 기타 징계해제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학생위원회위원장에게 징계해제를 요청한다.

③ 징계 해제에 관한 요청이 있을 경우 학생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징계를 해제한다.

제19조(사실통보) ① 학생위원회 위원장은 징계의 사실을 해당 지도교수, 학부(과)장 및 학부형과 본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학생위원회 위원장은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징계의 종류 및 사유를 교학처 교육운영팀으로 통보하여 학적부에 기재토록 하고 교내에 게시, 공고한다.

제20조(직접징계) 학내질서를 심히 문란케하거나 불법집회를 모의, 또는 학생들을 선동하여 학교의 학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케한 자는 총장이 징계를 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1984년 12월 29일 이후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개정) 이 규칙의 개정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한다.

(2) (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